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35

발의연월일: 2021. 3. 31.

발 의 자:이개호·윤재갑·어기구

김영진 · 맹성규 · 서삼석

이워택 • 이규민 • 김승남

위성곤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한국농어촌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·감시, 정보 수집·분석·제공 등 농지 상 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"농지은행진흥원"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·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농지은행진흥원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1. 영농규모의 적정화, 농지의 효율적 이용,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 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(이하 "농 지은행사업"이라 한다)
 - 가. 농지의 매매・임대차・교환・분리・합병에 관한 사업
 - 나. 농지의 가격,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
 - 다.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
 - 라.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
 - 마.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
 - 2. 「농지법」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
 - 3.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무

- ② 사장은 진흥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·시행하여 야 한다.
- ③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5.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5조의2(농지은행진흥원) ① 공
	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
	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
	농지은행진흥원(이하 "진흥원"
	이라 한다)을 둔다.
	1. 영농규모의 적정화, 농지의
	효율적 이용, 농업구조개선 및
	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
	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
	업(이하 "농지은행사업"이라
	한다)
	<u>가. 농지의 매매·임대차·교</u>
	환·분리·합병에 관한 사
	<u>업</u>
	나. 농지의 가격, 거래동향 등
	에 관한 정보의 제공
	다.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
	지 매입사업
	라.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
	어디 그 그 그 그 그 사이지
	마.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
	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
	2. 「농지법」 제51조제2항에
	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

제10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| 제10조(사업) ① -----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영농규모의 적정화, 농지의 5.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효율적 이용,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 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 업(이하 "농지은행사업"이라 한다)
 - 가. 농지의 매매・임대차・교 환 · 분리 · 합병에 관한 사 업
 - 나. 농지의 가격, 거래동향 등 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.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

위탁하는 업무

- 3.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
- ② 사장은 진흥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 하여야 한다.
- ③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농지은행사업

지 매입사업

<u>라.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</u> <u>업</u>

마.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

6. ~ 16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6. ~ 16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